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(최수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504 발의연월일: 2025. 5. 13.

발 의 자:최수진·김미애·김재섭

배준영 • 최보윤 • 정동만

박충권 · 김성원 · 김상훈

서지영 · 엄태영 · 박준태

김기웅 의원(13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앱 마켓사업자는 모바일 콘텐츠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내부에서 자사의 결제 수단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에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앱 마켓 시장에서의 독점력을 강화해 옴.

이에 따라 모바일 콘텐츠 제공사업자와 이용자의 비용 부담이 커지는 등 독점의 폐해가 심화되었으며, 국내에서는 2021년 「전기통신사업법」을 개정하여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함. 그러나, 일부 앱 마켓사업자는 개정 취지와는 다른 법 해석을 주장하며 여전히 자기 앱 마켓이나 모바일 콘텐츠 외부에서의결제를 제공하지 않거나 외부 결제에 불합리한 비용 등을 부담하도록하여 해당 규정을 사실상 회피하고 있는 상황임.

유럽에서 DMA(Digital Market Act) 시행 이후 앱 마켓사업자는 앱 외부에서의 결제를 허용할 뿐만 아니라 수수료 수준도 축소함. 국내도앱 마켓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당초 개정 취지에 따라 앱 마켓 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제공하도록 법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.

한편,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는 앱 마켓사업자의 금지행위를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보복이 두려워 이 를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.

이에 앱 마켓사업자가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 콘텐츠 등을 벗어 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지 못하도록 하여 금지행위 태양을 구체 화하고, 외부에서의 결제 이용에 대해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 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실질적으로 외부 결제 가 도입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.

또한, 인앱결제를 강제한 앱 마켓사업자가 동일한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를 상대로 계약 관련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을 부당하게 부과하거나 모바일콘텐츠 등의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등 금지행위를 추가로 위반한 경우 실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부담하도록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여 모바일콘텐츠 등 제공사업자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(안 제50조제1항제9호의2 및 제55조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0조제1항제9호 중 "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"를 "자기 앱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를 금지하는 행위"로 하고,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9의2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제에 대하여 수수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 등에 관한 불합리하거나 차별적 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당하게 부과하는 행위

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55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에 앱마켓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50조제1항을 다시 위반하여 제52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앱 마켓사업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앱 마켓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른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

- 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
- 2.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
- 3.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
- 4. 앱 마켓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- 5. 앱 마켓사업자의 재산상태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0조(금지행위) ① (생 략)	제50조(금지행위) ① (현행과 같
	음)
1. ~ 8. (생 략)	1. ~ 8. (현행과 같음)
9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콘	9
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 때	
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	
당하게 이용하여 모바일콘텐	
츠 등 제공사업자에게 <u>특정</u>	<u>자기</u>
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	앱 마켓 또는 모바일콘텐츠
위	등을 벗어난 외부에서의 결
	제를 금지하는 행위_
<u><신 설></u>	9의2. 앱 마켓사업자가 모바일
	콘텐츠 등의 거래를 중개할
	때 자기 앱 마켓 또는 모바
	일콘텐츠 등을 벗어난 외부
	에서의 결제에 대하여 수수
	료나 그 밖의 경제적 이익
	등에 관한 불합리하거나 차
	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
	당하게 부과하는 행위
10.・11. (생 략)	10.・11. (현행과 같음)
②・③ (생 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	법률 제20677호 전기통신사업법
일부개정법률	일부개정법률

제55조(손해배상) ①·② (생략)

<신 설>

<신 설>

제55조(손해배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-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2조 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은 후 에 앱 마켓사업자가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동일한 상대방을 대상으로 제50조제1 항을 다시 위반하여 제52조제1 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 법원은 앱 마켓사업자에게 발 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. 다만, 앱 마켓사 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 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④ 법원은 제3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- 1.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
- 2.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과징금
- 3. 위반행위의 기간 횟수
- 4. 앱 마켓사업자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
- 5. 앱 마켓사업자의 재산상태